

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58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-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 활성화 지원, 포상 및 기부자 예우 등 근거 조항 신설

주요내용

- 지정모금 및 기부 조항 신설 (안 제10조의 2)
- 기금으로 답례품 제공 비용 충당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(안 제10조 제3항)
-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25조)
- 포상 근거 마련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 신설 (안 제26조, 제27조)
-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 (안 제28조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9. 26. ~ 2024. 10. 16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**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

제7조제3호 중 “초본” 을 “초본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모집 운용비용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장학·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전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

당할 수 있다.

제10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지정모금 및 기부)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.

제25조(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 등)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및 각종 행사
 2.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사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
 3. 고향사랑기부제 조사 분석 및 연구
 4.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홍보물, 기념품이나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6조(포상)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7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
2.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, 시 누리집에 기부자 명단 공표

3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
4. 시정 홍보에 관한 홍보물 자료 제공
5. 연하장, 감사 서한문 발송 또는 감사패 수여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8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·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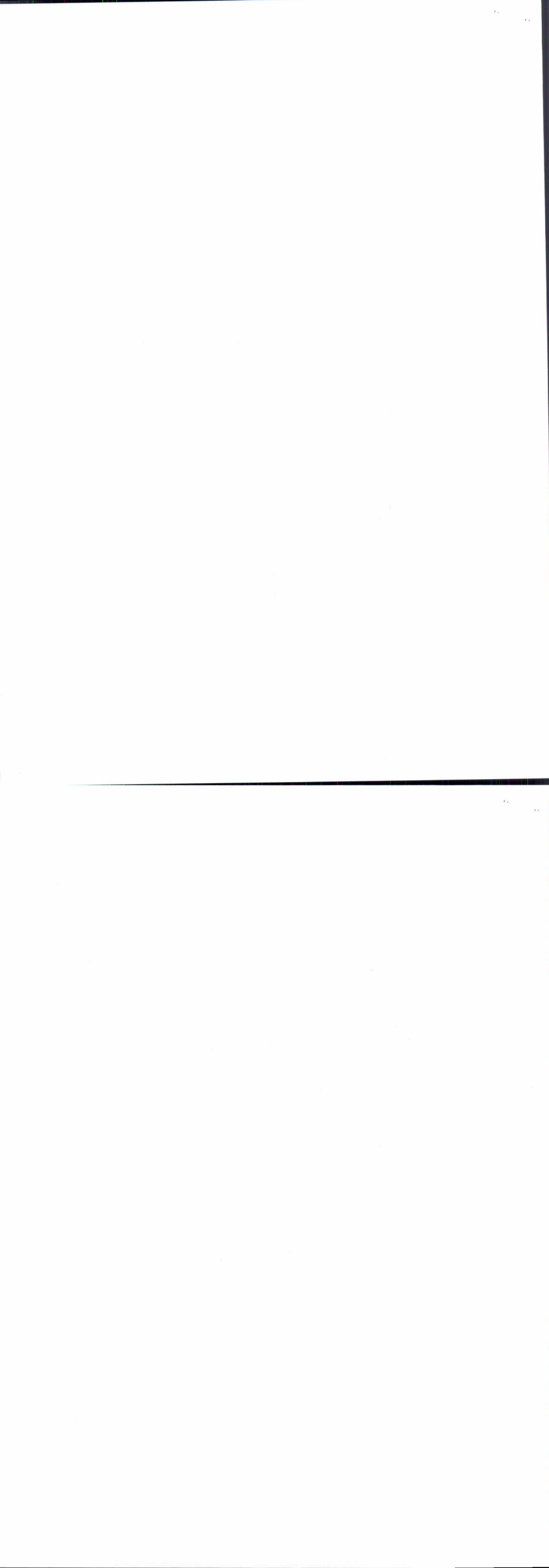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김 행 련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팀장 한 복 수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고 유 진 (행정 3444)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답례품의 종류) ①·② (생 략)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 1. ~ 10. (생 략) 11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승공예품	제3조(답례품의 종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
제7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한다. 1. ~ 2. (생 략) 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. ~ 5. (생 략)	제7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초 본, <u>거소신고사실증명서</u> ----- ----- 4. ~ 5. (현행과 같음)



제10조(기금의 사용목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기금의 사용목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모집·운용 비용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장학·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전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0조의2(지정모금 및 기부)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5조(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 등)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및 각종 행사

2.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사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

3. 고향사랑기부제 조사 분석 및 연구

4.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홍보물, 기념품이나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6조(포상)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7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
2.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, 시 누리집에 기부자 명단 공표
3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
4. 시정 홍보에 관한 홍보물 자료 제공
5. 연하장, 감사 서한문 발송 또는 감사패 수여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제28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·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